



보도자료

▶ 노사관계법제과 김경선 과장
박삼근 사무관

▶ 전화 : 2110-7340

▶ 팩스 : 503-9731

▶ 메일 : fejpark@molab.go.kr

▶ 2009.8.26(수) 배포

▶ 총 3쪽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 마련

- 노동부가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하여 보급한다.
 - 이번 「표준규약 권장안」은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하여 노노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다.
 - 또한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비롯, 노조 재정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노조가 관련 규약을 정비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 이번에 마련한 「표준규약 권장안」의 주요 내용은 i)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ii)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iii)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iv)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이다.
- 첨부. 「표준규약 권장안 주요 내용」 참조
- 노동부는 「표준규약 권장안」의 보급을 통해 노조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치규범인 규약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노조 운영의 자주성·민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첨부>

「표준규약 권장안」 주요 내용

-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정립
 - 대의원회는 필히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대규모이거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교대근무로 총회 소집이 번거로운 경우 설치하도록 하며,
 - 대의원회를 둘 경우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권장
 -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는 것보다 조합원 중 연장자가 대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적인 해결절차를 두도록 권장
- 임원의 선거, 임기 관련 명확화
 - 임원의 선거 등 노조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원과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
 - 임기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원 임기의 기산일과 만료일, 차기 임원 선거 실시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권장
 -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권장
- 재정투명성 강화, 민주적 운영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등 불투명한 재정 집행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임원의 독단적인 업무집행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감사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임기를 임원임기와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며,
 - 조합원 수나 조합재정이 일정한 규모에 이를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장
 - 감사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임원의 업무집행 또한 감사를 실시하며,
 - 특히, 일정수의 조합원 요구 시 감사를 실시하고, 조합 회계 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거나 다수의 조합원 요구 시 공인 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를 통해 회계감사 실시하도록 권장
- 부당한 결의·업무집행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 보장
- 부당한 노조의 결의나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조합 내부 자정 제도로서 조합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조합원은 감사에게 회계 및 업무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산결과·운영상황 열람요구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
 - 조합원은 선거결과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장
 - 조합원 징계 시 소명 기회 및 이의신청을 보장하도록 권장